한부모가족 지원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01 서비스 종류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저소득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으로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다만, 취학 중인 경 우에는 22세 미만 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 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복학시만 해당)인 경우 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을 말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아동, 월 210,000원 지원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까지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구분	내용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추가지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0,000원 추가지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 녀, 1인당 연 93,000원 지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0,000원 지원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 우					
	생계비(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 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월/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	----	----	----	----	----	--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 손가족	기준 중위 소 득 63%	2,320,04	42,970,23	43,609,84	54,218,31	34,799,572

(2)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내용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구의 아동 1인당 월 350,000원 ※ 단, 0~1세의 자녀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습 시 연 1,540,000원 이내 지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 시 월 100,000원 지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구분	내용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					
	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검정고시 학습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2024년 청소년 한부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 득 65% 청소년 한부 모 기준 중위 소 득 72%	2,393,69	63,064,52	73,724,44	34,352,22	84,951,940	
		2,651,47	83,394,55	34,125,53	74,820,92	95,485,226

02 신청방법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신청, 온라인 신청(bokjiro.go.kr)

주소지 시·군·구에서 가구 및 소득조사를 한 후 지원대상가구에 해당이 되면 서면으로 통 보

상담 및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온라인상담(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남편과 헤어져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적다면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담당 공무원이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등 필요사항에 대해 조사한 다음 결정합니다. 긴급하다면 긴급복지 대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 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 센터(☎129) 및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면, 한국어를 잘하는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 모 또는 부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알아두세요!

양육비 이행 서비스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 자녀가 대학 재학 중일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의 경우 22 세+군복무기간까지 지원)
- ※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일 경우 지원

지원 서비스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대면상담을 통한 양육비 관련 상담 당사자 간 양육비 관련 협의성립 지원 양육비(인지)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조치 이행상황 모니터링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 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기간: 9개월(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함

이용 방법

전화 상담 : 251644-6621

온라인 상담: www.childsupport.or.kr

방문 상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남산스퀘어) 21층,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예약제)

※ 접수는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만 받음

※ 통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